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초지 조성 완료 후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초지 조성 관련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천재지변 등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대체초지조성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형도면 등 고시 절차”를 시행령에 명시(안 제7조제2항)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초지 조성 완료 이후 지형도면 등을 고시토록 초지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나. “천재지변 등에 대해 납부유예 제도” 도입(안 제16조의2제5항)

대체초지조성비 납부 의무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해 납부 의무자의 부담 완화

다.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 추가(안 제16조의3제1항제9호 및 별표2)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대상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 따른 ‘첨단투자지구’를 추가해 국가산업발전을 도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23.4.3. 부담금운용심의회 가결)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초지 조성이 완료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제5항 단서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체금의 납부를 납부기간 연장승인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체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납부유예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2.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의 사유로 납부유예 신청

제16조의3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에 제1호 시설 및 용지구분란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초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초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별표 2 제1호 감면기준란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설 및 용지구분	감면 기준	근거 규정	비고
1. 중요 산업시설 가.~사. (현행과 같음) 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초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초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100분의 50 면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 및 이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는 제외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초지조성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초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초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초지조성 허가 신청) (생략) <u><신 설></u>	제7조(초지조성 허가 신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받은 초지 조성이 완료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u>
제16조의2(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① ~ ④ (생략) ⑤ 기금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부고지서의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해 고지해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가 분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자는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체금의 납부를 납부기</u>	제16조의2(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금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부고지서의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해 고지해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가 <u>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체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납부유예를 할</u>

간 연장승인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⑥ ~ ⑩ (생 략)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①법 제23조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8. (생 략)

<신 설>

② ~ ⑤ (생 략)

[별표2]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시설 및 용지구분	감면 기준	근거 규정	비고
-----------	----------	----------	----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2.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의 사유로 납부유
예 신청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①-----

-----.

1. ~ 8. (현행과 같음)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안에 설치
하는 시설용지(택지로 조성하
는 경우 및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표2]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시설 및 용지구분	감면 기준	근거 규정	비고
-----------	----------	----------	----

1. 중요 산업시설		(생략)		1. 중요 산업시설		(현행과 같음)	
가.~사. (생략)	(생략)		(생략)	가.~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신설>	아.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6에 따른 첨단투 자지구 안에 설치 하는 시설용지로서 2024년 1월 1일부 터 2025년 12월 31 일까지 초지전용허 가를 신청하거나 초지전용신고를 하 는 경우	100분 의 50 면제		택지로 조성하 는 경우 및 이 표의 다 른 규정 에 따라 감면되 는 경우 는 제외 함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연 락 처	(044) 201 - 2354